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5. 31.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7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정무위원회 (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 8. 27.)

  상정, 축조심사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4. 11.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9차 정무위원회 (2024. 12. 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승수의원)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이 최대 37만원에 불과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소득이 법원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인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더라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곤란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한편, 보훈관계법령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과 생계지원금(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을 정하고 있는데, 생계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 확인·심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될 경우, 생계지원금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폐지되는 효과가 있음.[1)2)]

---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제4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4항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현재 고시 개정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80세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3]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이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 강화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4]

□ 다만, 개정안은 생활수준 조사의 기준이 되는 '동거가족'의 범위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 부모 및 자녀로 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 및 30세 미만 자녀는 거소를 달리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생활수준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반면, ② 현역군인 등 의무복무 이행자 또는 가출·행방불명 등으로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된 자 등의 경우에는 생활수준 조사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거가족'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5]

□ 한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추가되는 대상 인원은 14,536명이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약 39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희망자가 중상이자인 경우는 2023년에, 수급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2024년에 각각 관련 고

이상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게 됨.

3)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동 기준을 폐지하였음.

4)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의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검토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의안번호 제2023-875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조사의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2조), 국가보훈부도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조사의 기본단위로서 '가구원'을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고 있음(「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시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실질적 예산 소요는 약 2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생활조정수당 지급 하한기준 명시

□ 현행법령은 국가유공자 등의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24만 2천원부터 37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조정할 경우 법률에 따른 지급액의 하한(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므로, 국가재정 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생활조정수당과 유사한 취지인 생계지원금과의 수당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6)7)] 이에 따라 생

6) 다만, 3건의 개정안과 같이 발의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제2200059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음.

7) **「참전유공자법」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엽제법」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계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다른 보훈대상자들로부터 지원 수준 상향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국가재정 부담이 야기될 수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의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8유공자법」 제89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18민주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